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 산정 책 처 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고서 등 간행물에 조사·분석 요구주체 명시〉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42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 경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환 · 이성윤 · 부승찬 · 박용갑 · 허 영 · 박 정
장철민 · 박상혁 · 김태선 · 조정식 · 최혁진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 의안번호 : 1604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 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

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에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조사 및 분석 결과의 활용) <u>제3조제5호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에 그 조사 및 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1)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분석,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거시경제동향 분석·전망 및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고서나 정기간행물²⁾로 발간하고 있음.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동향 & 이슈, NABO Focus,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예산준추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규정에 따라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조사·분석을 요구할 경우 회답을 비공개로 제공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연평균 600여 건 내외의 회답서를 작성하였음.

[표-2] 최근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현황

(단위: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838	519	579	478	664	61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은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분석의 취지와 문제의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³⁾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사·분석은 국회의원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점⁴⁾을 고려할 때, 간행물을 통해 조

3) 개정안의 제안이유

4) 이러한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뿐만 아니라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업무(조사·분석 요구 여부, 요구사항 및 회답 내용 등)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규정인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에 두고 있음.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국회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회도서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회답
2.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3.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분석의 요구자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 의회의 입법지원기관⁵⁾도 유사 직무 수행 시 기밀성을 주요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⁶⁾

둘째, 간행물이 조사·분석 및 회답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사·분석을 요구한 주체를 명시할 경우 기관의 독자적인 분석이 아닌 해당 주체의 의견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기관의 중립성·독립성⁷⁾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행물이 발간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조사·분석 회답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 현행 규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분석 요구자를 명시할 경우 해당 요구 주체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제15조(회답내용의 비공개) ① 회답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요구권자가 회답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3. 회답내용이 공개되거나 유출되어 야기되는 논란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가 공개되거나 유출된 회답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경우
5. 원본이 공개된 자료의 번역물에 해당하는 경우
6. 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5) 미국의회조사처, 유럽의회조사처, 영국의회 하원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 독일 연방하원 학술지원처

6) 조규범·이재영·배정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p.3-4.

7)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지위) ②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처장)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15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예산 분석 실	<예·결산 분석> ○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8종 21권) ○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6종 20권) ○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종합안내서> ○ 2025 대한민국 재정 ○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정감사> ○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예산안 분석>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권) <사업평가보고서>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 ○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성과관리 실태 평가 ○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추 계 세 제 분 석 실	<재정추계> ○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재정전망> ○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세제분석>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종합안내서> ○ 2025 대한민국 조세 ○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재정전망>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효과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세제분석> ○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경 제 분 석 국	<예·결산 분석> ○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경제현안 분석>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 과제
	<경제전망> ○ 2025년 NABO 경제전망 ○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 NABO 인구전망	<소속기관 공동연구과제>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권)
	<종합안내서> ○ 2025 대한민국 경제	
	<전문동향지> ○ NABO 경제 동향 & 이슈(6권) ○ NABO 산업 동향 & 이슈(6권)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4권) ○ NABO 인구·고용 동향 & 이슈 (4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